

KCOPA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온라인보호부



COPYRIGHT INFRINGEMENT

ISSUE REPORT

저작권 침해 이슈 리포트

유튜브 패스트무비 채널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온라인보호부 김찬솔 과장

I. 패스트무비 정의 및 현황

【패스트무비(FastMovie) 정의】

〈패스트무비〉는 일반적으로 2시간짜리 영화를 30분 정도로 요약하거나 장편 드라마를 2시간 정도로 요약한 리뷰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패스트무비는 주로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을 말하지 않고 이야기, 캐릭터, 주요 요소를 간략하게 소개해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하여 스포일러를 피하더라도 작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해 시청자들에게 좀 더 생산적인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최근 몇 년간, OTT(Over The Top) 등을 통한 스트리밍 콘텐츠 서비스가 대중적인 미디어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소비 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환경 변화에 힘입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콘텐츠인 〈오징어게임〉, 〈지옥〉, 〈더 글로리〉 등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매우 큰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대중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며 스트리밍 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Netflix(38.2%), 티빙(18.1%), 웨이브(14.4%), 쿠팡(11.8%), Disney+(5.6%) 등의 OTT 기업들이 각각의 서비스와 콘텐츠로 인기를 끌며, 이용자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범람하는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긴 영화나 장편 드라마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유튜브 패스트무비 채널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패스트무비 채널은 유튜브 채널 서비스 중 하나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를 간략하게 편집하여 시청자들이 줄거리의 핵심 내용을 짧은 시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의미한다. 패스트무비는 일반적으로 2시간짜리 영화를 30분 정도로 요약하거나 장편 드라마를 2시간 정도로 요약한 리뷰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이러한 패스트무비는 종종 원작의 클립을 함께 편집하고, 그 위에 내레이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텍스트 오버레이, 애니메이션 또는 기타 시각적 효과가 포함되기도 한다. 패스트무비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요약 정보와 해설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전체 작품을 시청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신 동향을 쉽게 파악하고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패스트무비 채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편집하여 결말을 포함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부분적으로 수정 및 사용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영화의 중요한 장면과 대사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변형하고, 편집자의 주관적인 해석과 평가를 반영하여 영화의 본질과 가치를 왜곡한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유튜브에서 서비스 중인 패스트무비 채널을 직접 조사하여 해당 채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고, 유튜브의 저작권보호 정책과 패스트무비에 관한 저작권 침해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넷플릭스 따라잡는다"...'토종 OTT 1위' 탄생, 티빙 시즌 합병(머니투데이, 김승환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0108570451935> / 2023.03.06. 최종 열람



II. 조사개요

본 조사는 2023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노출 빈도 상위 유튜브 10개 채널을 선정하여 주요 채널별 인기 동영상 순으로 조사하였으며, 채널명, 구독자 수, 누적 조회 수, 채널별 상위 10개 콘텐츠 제목 및 장르, 콘텐츠 국가, 개별 조회 수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만, 본 조사에서는 채널별 사용된 콘텐츠의 권리자 이용허락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조사의 한계가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은 조사 완료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유튜브 패스트무비 채널 조사개요

- 조사 기간 : '23. 1. 6.(금) ~ 2. 10.(금), 약 한달간
- 조사 대상 : 콘텐츠 노출 빈도 상위 유튜브 10개 채널 선정
- 조사 방법 : 유튜브 채널 키워드 검색을 통한 직접 조사
- 주요 현황
 - 유튜브 내 게재되어 있는 영상 콘텐츠는 편집 없이 재생되는 전체 영상과 요약하여 볼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된 영상(패스트무비)이 혼재하고 있음
 - 패스트무비의 경우, 일부 권리자 허락 후 게시되는 영상물도 존재하나 패스트무비 자체를 명백한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
 - 유명 채널의 경우 권리자가 홍보를 제작비를 지원하여 제작된 패스트무비 영상도 존재

당신의 주말을 삭제 시켜 드립니다. 99년마다 인간계에 내려와 쓰레기 짓을 일삼는 양아치 범죄자들에게 저승행 특급택시 태워 보내주는 "죽음의 신"

구독자 80.1만명

구독

5.8천

공유

공유

오프라인 저장

...

조회수 897,992회 2023. 2. 24. #폭두의계절 #김정현 #임수향

본 영상은 저작권 허가만 받은 자발적 리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내 저작권 보호 정책인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콘텐츠 ID(Content ID)', '유튜브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과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편집 저작물 등을 유튜브에 올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 및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정 이용에 관한 내용도 다루었으며,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릴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살펴보았다.

III. 분석결과

조사된 유튜브 상위 10개 채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8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한 '지무비 : G Movie' 채널이 1위로 나타났으며, 216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한 '고몽' 채널이 2위, 151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한 '김시선' 채널이 3위로 나타났다. 유튜브 안에 채널 수 상위 10개 채널에 대한 순위와 채널명, 구독자 수, 전체 누적 조회 수는 아래와 같다.



1. 유튜브 상위 10개 패스트무비(영화 리뷰) 채널 주요 현황

순위	채널명	구독자 수(명)	누적 조회 수(회)
1	지무비 : G Movie	2,580,000	1,063,398,693
2	고몽	2,160,000	1,163,209,788
3	김시선	1,510,000	583,483,738
4	드림텔러	1,100,000	209,311,219
5	B Man 비맨	1,160,000	643,440,799
6	구불	909,000	308,455,769
7	동네비디오방	529,000	341,615,950
8	영반	353,000	231,746,096
9	오영이무비	110,000	81,290,249
10	채널훈_영화들려주는남자	32,800	12,354,030

2. 전체 채널별 상위 게시물 분석 현황

상위 10개 채널의 인기 동영상 각 10건씩(최고 조회 수 기준)을 선정하여 총 100건의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장르별 유통량(비중)은 ‘영화’ 총 59건(59.0%), ‘드라마’ 총 40건(40.0%), ‘예능’ 1건(1.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패스트무비 채널의 콘텐츠 비중은 스토리와 해설이 가능한 영화, 드라마 콘텐츠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 : 건, %)

구분	영화	드라마	예능
유통량(비중)	59건(59.0)	40건(40.0)	1건(1.0)

* 각 채널별 조회수 상위 10개 게시물을 선정하여 총 100개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분석

3. 국내 콘텐츠와 해외 콘텐츠 비교

채널에 게시된 게시물 총 100건의 콘텐츠에 대해 국내 콘텐츠와 국외 콘텐츠를 분류한 결과, 국내 콘텐츠는 총 59건(59.0%)으로, 이는 모든 콘텐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국외 콘텐츠는 41건(41.0%)으로, 국내 콘텐츠보다는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단위 : 건, %)

구분	국내 콘텐츠	해외 콘텐츠	합계
콘텐츠 수	59	41	100
비중	59.0	41.0	100.0



4. 콘텐츠 장르별 국내외 비교

전체 콘텐츠 중 예능을 제외한 총 99건의 콘텐츠를 영화와 드라마로 분류하여 국내외 해외 콘텐츠를 비교한 결과, 영화 콘텐츠 총 59건 중 국내 콘텐츠는 32건(54.2%), 해외 콘텐츠는 27건(45.8%)으로 해외 콘텐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드라마 콘텐츠 총 40건 중 국내 콘텐츠는 26건(65.0%), 해외 콘텐츠는 14건(35.0%)으로 드라마 역시 국내 콘텐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 분류는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른 콘텐츠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국내외 해외 콘텐츠는 제작 국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단위 : 건, %)

구분	국내 콘텐츠	해외 콘텐츠	합계
영화	32	27	59
드라마	26	14	40
비중	65.0	35.0	100.0

5. 구독자 수 상위 3개 채널 분석결과

조사된 상위 10개 채널에 대하여 '채널명', '구독자 수', '누적 조회 수', '상위 10개 콘텐츠 및 국가, 조회 수' 등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채널에서는 모두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각 채널의 구독자 수와 누적 조회 수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위 10개 채널에서는 해당 콘텐츠의 국가에 따라 인기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작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두 나라의 드라마와 영화가 특히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상위 10개의 콘텐츠 중에서도, 이러한 국가의 작품이 상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독자 상위 3개 채널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채널명 : 지무비 : G Movie

순위	채널명	구독자 수	장르	조회수 상위 콘텐츠	국가	조회수
1	지무비 : G Movie	2,580,000	영화	제럴드의 게임 (2017)	미국	33,810,000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대한민국	12,742,608
			드라마	술꾼 도시 여자들	대한민국	11,056,752
			드라마	어둠속으로	벨기에	10,475,926
			영화	다세포소녀 (2006)	대한민국	9,851,883
			드라마	번외수사	대한민국	9,364,709
			드라마	이태원클라쓰	대한민국	9,221,852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대한민국	8,992,667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대한민국	8,807,765
			영화	극한직업 (2018)	대한민국	8,581,209



2) 채널명 : 고몽

순위	채널명	구독자 수	장르	조회수 상위 콘텐츠	국가	조회수
2	고몽	2,160,000	영화	크리쉬	인도	24,719,495
			드라마	이상한변호사 우영우	대한민국	17,236,971
			드라마	나의아저씨	대한민국	17,220,983
			드라마	라이브	대한민국	16,359,191
			영화	내안의 그놈 (2018)	대한민국	14,885,085
			영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2019)	대한민국	13,345,370
			영화	박화영 (2018)	대한민국	12,812,498
			드라마	사이코메트리그녀석	대한민국	12,718,203
			드라마	The K2	대한민국	11,188,805
			드라마	아는 와이프	대한민국	9,926,194

3) 채널명 : 김시선

순위	채널명	구독자 수	장르	조회수 상위 콘텐츠	국가	조회수
3	김시선	1,510,000	예능	마이리틀텔레비전	대한민국	17,491,738
			드라마	레인	미국	10,613,426
			드라마	I-랜드	미국	10,113,087
			영화	데스티네이션 3 -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2006)	미국	8,496,199
			드라마	오징어게임	대한민국	6,816,190
			드라마	종이의집	스페인	6,685,239
			드라마	인사이드	대한민국	6,286,280
			영화	나의 마더 (2018)	오스트레일리아	6,081,156
			드라마	마인드헌터	미국	5,900,989
			드라마	오징어게임	대한민국	5,883,985

IV. 패스트무비 저작권 문제

1. 유튜브 저작권 보호 정책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영상 공유 플랫폼 중 하나이며, 수많은 사용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고 시청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에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게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유튜브에서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유튜브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첫째로, 유튜브는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를 준수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제정된 저작권 보호 법률로,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다면, DMCA 미디어 이용허가서를 통



해 해당 동영상에 삭제가 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둘째로, 유튜브는 ‘콘텐츠 ID(Content ID)’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고, 유튜브에 업로드 된 동영상 중 해당 저작물과 유사한 부분이 포함된 동영상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셋째로, 유튜브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 동영상의 업로더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튜브는 저작권 소유자와 협력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동영상을 삭제한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라이선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 이미지, 동영상 등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1)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유튜브는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라는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 DMCA는 미국에서 제정된 디지털 저작권 보호 법률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법률이다. 유튜브는 DMCA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구분	내용
DMCA Takedown Notice	저작권 소유자가 유튜브에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소유자는 DMCA Takedown Notice를 작성하고, 이를 유튜브에 제출하면 유튜브는 이를 검토하고,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
DMCA Counter Notification	삭제된 콘텐츠를 복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한 사용자는 DMCA Counter Notification을 작성하고, 이를 유튜브에 제출. 저작권 소유자는 이를 검토하고,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콘텐츠를 복구

‘DMCA Takedown Notice’와 ‘DMCA Counter Notification’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과,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DMCA Takedown Notice’는 삭제되지 않아도 되는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묘한 상황에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튜브는 DMCA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콘텐츠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콘텐츠 ID(Content ID)

유튜브의 콘텐츠 ID는 유튜브에서 업로드 된 비디오에서 저작권 침해를 탐지하고 보호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음악, 비디오, 오디오 클립, 이미지 등 다양한 콘텐츠 형식을 인식하며, 이를 통해 소유자가 콘텐츠를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다. 콘텐츠 ID 시스템은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과정	내용
콘텐츠 등록	콘텐츠 소유자는 자신의 콘텐츠를 등록하여 Content ID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때, 콘텐츠는 식별자인 "asset"으로 등록되며, 이 식별자는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사용
탐지	유튜브 사용자가 업로드한 비디오에서 Content ID 시스템이 등록된 콘텐츠와 일치하는 부분을 탐지합니다. 이때, 일치하는 부분은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등의 다양한 콘텐츠 형식으로 나타남
조치	Content ID 시스템은 탐지된 콘텐츠에 대해 소유자가 지정한 조치를 취함. 예를 들어, 콘텐츠 소유자가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광고 수익을 받기로 지정한 경우 등

콘텐츠 ID 시스템은 콘텐츠 소유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먼저, 콘텐츠 ID를 사용하면 콘텐츠 소유자는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콘텐츠 소유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공유되는 범위를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 ID 시스템에는 한계도 있다.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은 자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콘텐츠 ID를 등록하지 않은 콘텐츠는 이 시스템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3) 유튜브 라이선싱 프로그램

유튜브는 다양한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라이선싱 프로그램은 저작권자와 유튜브 이용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라이선싱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프로그램 명	내용
YouTube Audio Library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악 라이브러리
YouTube Music	구독 서비스를 통해 유료 음악 스트리밍 제공
YouTube Premium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 배경 재생, 모바일 재생 등의 기능 제공
YouTube Studio	업로더가 자신의 채널을 관리하고 수익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
Fan Funding	시청자가 채널 운영자에게 직접 후원할 수 있는 기능
Super Chat	라이브 스트리밍 중 시청자가 채팅을 하면서 금액을 지불해 댓글을 강조할 수 있는 기능
YouTube Partner Program	큰 규모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위 프로그램들은 모두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며, 저작권 보호와 함께 사용자들의 콘텐츠 생산과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 되고 있다.



2. 저작권 침해 문제

패스트무비는 사용자들에게 긴 시간의 영화나 장편 드라마를 훨씬 짧은 부분으로 압축하여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서비스로 평가받지만,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잠재적 결과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복제권, 전송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원본 콘텐츠를 생산한 창작자들의 노력과 금전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구독자 수와 조회 수가 많을수록 광고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다른 채널에서 제작한 동영상이나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유혹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있어서 위험한 행위이다. 채널 운영자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은 직접 편집하여 제작한 동영상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생각이다. 직접 제작한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 포함된 세부 콘텐츠 역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영상 안에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배경 음악, 이미지, 사운드 이펙트, 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자신이 제작하여 채널에 게시한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신의 채널에서 사용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쟁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

1)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동영상에서 일부를 추출하거나 혹은 동영상 사이트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타인의 동영상을 내려받아 자신의 PC에 저장하여 가족끼리 감상하는 정도의 이용 행위는 문제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거나 불특정다수와 파일을 공유한다면 이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적인 감상 목적이더라도 권리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올린 동영상임을 알면서 이를 내려받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고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 영화나 방송 동영상을 일부 캡처하여 올리는 이른바 ‘짤방’이나 GIF 형식으로 올리는 ‘움짤’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권리자가 이 정도의 이용은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지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 2차적저작물성 인정 여부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패스트무비는 종종 원작의 클립을 함께 편집하고, 그 위에 해설이나 내레이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텍스트 오버레이, 애니메이션 또는 기타 시각적 효과가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일부 편집 과정에서 영상을 좌우반전 시키거나 재생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하는 경우와 전체 화면의 특정 부분만 노출되도록 해서 올리면 그 변형된 동영상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창작물이며,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변형, 수정, 번역, 각색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노래가 사용되는 경우, 원래의 곡을 가수가 부르는 커버 버전으로 녹음한 것이나, 원곡을 일부 변형하여 새로운 가사로 만든 노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또한, 책이나 논문 등에서 인용한 내용을 번역하거나 해석하여 새로운 글을 작성하는 것도 2차적저작물이다. 패스트무비 역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원본 영상을 편집하여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시각적 효과를 적용한 경우, 예를 들어 영화를 리뷰하면서 감독의 목적이나 의도, 본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녹여 내레이션 등으로 내용을 소개할 경우 이는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다. 즉, 원본 동영상을 변형해서 만든 새로운 동영상이 원본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면 동영상을 변형한 사람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은 2차적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차적저작물을 제작한 사람이 원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본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본 저작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이나 변형은 또다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판결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3) 공정이용 여부

유튜브가 안내하는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은 주로 영미권 국가의 법리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되기 때문에, 국내 사용자들이 이를 모두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류는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국내 법리와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저작권 관련 정책 중 ‘공정이용’ 부분은 상당히 비중 있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제도가 국내 저작권법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23조 ~ 제36조

재판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저작권법 제101조의3 ~ 제101조의5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공정이용이란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공익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구분	내용
사용 목적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며, 또한 상업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된다
사용 범위	사용하는 양과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즉, 사용한 양이 저작물의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된다
사용 방법	저작물을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비슷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된다
저작자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	저작자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에는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저작자의 저작권의 범위, 시대적 여건 등을 고려한다
시장 가치의 침해 여부	사용하는 저작물이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에는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된다

4) 공정이용 관련 주요 Q&A

Q. 비영리나 교육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건 괜찮지 않을까?

A. 만약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 수익 창출을 시도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영상을 공유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저작물은 여전히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교육용", "비영리목적", "모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음", "출처표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에서 면제될 수는 없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이용하는 내용과 규모, 용도, 영향 등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권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Q. 영화나 방송 동영상을 전체 분량의 일부만 짧게 사용하는거라면 괜찮지 않을까?

A.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은 동영상에서 짧게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시간적 또는 양적 비중을 정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없다. 공정이용 요인에 해당하고 그 비중이 적다면 '공정이용' 주장에 유리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원 역시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되는 사용 비중을 달리 판단할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적은 비중을 사용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Q. 원본 동영상의 저작권자 등 출처만 표시하면 괜찮지 않을까?

A.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따라서 출처를 표기한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복제나 공중송신 등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출처를 표기 후 사용을 허락해 준다는 표시를 해 놓은 경우라면, 출처를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변경이나 각색 등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공공저작물 등 저작권이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 인용의 목적인 보도·비평·교육·연구는 예시로 그 밖의 목적으로도 인용이 가능
- ✓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용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루어지는 한 인용할 수 있다’로 판시²⁾
- ✓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에 대한 해석은 사안마다 다르며, 이제까지 판례는 피인용저작물(원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관계가 있으면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³⁾
- ✓ 판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원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⁴⁾

□ **저작권법 제35조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① <요약>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 영화 인용에 관한 판례를 보면 110여 편의 영화에서 주인공이 30초가량 피인용영화를 시청하는 장면은 공정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⁵⁾
 - ✓ 예능 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약 3분간 영화의 일부 장면을 방영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⁶⁾

2)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4)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8. 선고 2004카합344 결정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V. 마치며

유튜브에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인 CMS 계정이 존재한다. 1차 저작권자에게 유튜브에서 부여하는 권한 계정으로, 1차 저작권자가 해당 계정에 자신의 콘텐츠를 올리게 되면 해당 콘텐츠의 ID가 생성이 된다. 일종의 콘텐츠 지문 등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누군가 콘텐츠 ID에 등록된 콘텐츠 일부분을 유튜브에 올리게 되더라도 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해당 저작권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그럼 1차 저작권자는 본인이 설정한 옵션에 따라 그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가져오거나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경고를 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모든 유튜브 채널은 누적 3회의 경고를 받으면 구독자 수가 아무리 많은 채널 운영자라도 채널이 삭제되게 된다. 유튜브의 콘텐츠 ID 기술 수준은 현재 원 저작물에 어떠한 변형을 주고 짧게 편집하여 올려도 잡아낼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최근 국내외 영화 배급사 저작권 담당자들이 모인 회의에 참석하여 유튜브 패스트무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의견을 묻은 적이 있다. 그들 모두 콘텐츠 ID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별 기술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으며, 인기 패스트무비 채널의 경우 협약을 맺고 광고 목적으로 영상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일도 많다고 한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채널 운영자로서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영상을 편집 및 제작하여 올려야 한다. 위에서 공정이용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2차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1차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패스트무비 채널을 보면 ‘결말 포함’을 제목에 걸고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한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를 올리고 또 시청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콘텐츠 ID로 인한 누적 3회 경고로 채널이 삭제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으며, 심할 경우 고소를 당해 손해 배상 재판으로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도쿄지방법판소가 영화를 10분 분량으로 요약해 유튜브에 게시한 이른바 패스트무비 채널 운영자에게 영화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처음으로 패스트무비 채널 운영자의 민사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국내 콘텐츠 시장 역시 해당 판결이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국내 패스트무비 채널 역시 저작권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경고와 함께, 편집을 통해 요약하더라도 영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로 분류돼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의 콘텐츠 ID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으며, 지금 당장 발견 못 할 지라도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는 패스트무비 채널은 불법적인 콘텐츠 제공 방식으로 인해 온라인 영화 및 드라마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합법적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과 발전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